<충청대학교 공고 제2022-4호>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및 「충청대학교 학칙」 제68조에 의거하여 '2023학년도 본부조직개편에 관한 학칙 개정사항'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1일

### 충청대학교 총장

#### □의견제출□

「충청대학교 학칙」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0일까지 기획처(jjy@ok.ac.kr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충청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

## 충청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

#### ■ 개정사유

가. 정관 제 88조(대학본부)개정에 따른 후속조치

### ■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교무회 구성 및 대학본부 변경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규정명 : 학칙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제54조(구성) ①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 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9. 2. 2.> ② 교무회는 총장, 부총장, 교학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평생직업교육처장, 산학협력처장, 취업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2. 2. 15., 2004. 3. 1., 2005. 3. 1., 2006. 2. 1., 2007. 3. 1., 2008. 3. 1., 2009. 2. 2., 2011. 3. 1., 2012. 2. 1., 2013. 4. 23., 2014. 10. 23., 2015. 11. 12., 2017. 7. 1.>	② 교무회는 총장, 부총장, 교학처장, 입학홍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2. 2. 15., 2004. 3. 1., 2005. 3. 1., 2006. 2. 1., 2007. 3. 1., 2008. 3. 1., 2009. 2. 2., 2011. 3. 1., 2012. 2. 1., 2013. 4. 23., 2014. 10. 23., 2015. 11.	
	사무처) <개정 2004. 3. 1., 2005. 3. 1., 2006. 2. 1., 2007. 3. 1., 2008. 3. 1., 2009. 2. 2., 2011. 3. 1., 2012. 2. 1., 2014. 10. 23., 2015. 11. 12., 2017. 7. 1. 2023 .03. 01> 2. 학부	